

○ 박문숙 위원('96. 11. 29. 여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1. 서울시의 경우 당초 60억원의 여성발전기금 계획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조성이 영세하면 상향조정하면되지 왜 폐지하느냐고 물으시고
2. 경기도가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에 관한 모든 사업비로 너무 확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와
3. 예산담당관련부서와 합의가 끝난 것은 언제고, 도지사 결재후 예산담당부서 결재를 맡는 것이 관례인가를 물으시고, 기금 조성과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으나, 보류 내지 폐지 후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1. 도에서는 경기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운동 등에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도의 기금운영 개선방안 검토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에 대한 모든 사업비로 너무 확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범위를 설정한 것이며, 매년 여성단체의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접수받아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도지사의 결재는 사전 예산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 결재를 받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도의 각종 기금 통·폐합 등 개선방안 검토와 연관 지연된 것이며, 추진과정을 미리 의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구두라도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